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5. 8.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0713란 앞에 0703란, 0703.10란, 0703.10.10란, 0703.10.1010란, 0703.10.1090란, 0712란 및 0712.20.000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703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선한 양파 기준	신선한 양파 기준	신선한 양파 기준
0703	10		양파와 샬롯(shallot)	20,645톤	20,000톤	40,645톤
0703	10	10	양파			
0703	10	1010	껍질을 벗긴 것			
0703	10	1090	기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	20	0000	양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